

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(1지구)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

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(1지구)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 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3월 30일

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

1. 사업지역의 사업명, 위치, 면적

- 가. 사업명 : 웅동지구(1지구) 개발사업
- 나. 위 치 :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, 수도동 일원
- 다. 면 적 : 2,258,692.1㎡

2. 개발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

사업시행자 명칭	주 소	비 고
창원시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(용호동)	대표자 창원시장
경남개발공사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(용호동)	대표자 경남개발공사 사장

3. 처분 내용 : 웅동지구(1지구)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

4. 처분 사유(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제1항 제2호, 제3호, 제6호)

-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
-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
-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